

서울특별시의회
제336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6. 6.

서울특별시의회
이효진 의원 (국민의힘 비례대표)

□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효진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임신 중인 시민이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보다 편안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,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으로는,

□ 제5조의2제3항제4호의 감면 대상자 목록 중 “발급대상자” 뒤에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였습니다. 이로써 기존 감면 대상인 18세 이하, 65세 이상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,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와 함께 임산부도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

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-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은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생활밀착형 공간입니다. 신체적 부담이 크고 가벼운 야외 활동과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임산부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.
- 이번 개정안이 임산부 예우 정책의 실질적 확대에 기여하고, 서울시 각종 공공시설에서 임산부 배려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,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